

##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-33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 · 03 · ·  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### 1. 제안이유

- 『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』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되는 명예시민증서와 함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조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내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제2항)
- 나.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의 문안·규격 및 형태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5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##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외국인에게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내국인에게는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.

제5조 제목 중 “명예시민증의”를 “명예시민증서”로하고 “명예시민증서”를 “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총 무 과
입 안	과장 직위·성명	총무과장 홍 현 섭
	담당 직위·성명	총무담당 류 범 상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한 영 수 860-2112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수여)①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제5조(<u>명예시민증의 문안 등</u>) <u>명예시</u> <u>민증서의 문안·규격 및 형태는 규</u> <u>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4조(수여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3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</u> <u>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</u> <u>외국인에게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</u> <u>하고 내국인에게는 명예시민증서</u> <u>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.</u></p> <p>③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제5조(<u>명예시민증서 문안 등</u>) <u>명예시</u> <u>민증서</u>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<u>및 명예시민증의</u> ----- -----.</p>